

의안 번호	2518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2. 4.(목), 강혜순 의원 외 9명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2. 4.(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7.(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구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 (안 제3조 ~ 제4조)
-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준용 사항 (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다.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순정)

- 본 조례안은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봉사활동 해 온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

-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거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2. 생략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